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
2024. 12. 9.(월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

운영계획안

(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0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으로 재활용품 사업, 분리배출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

나.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

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가능 자원의 수거율 제고 등

5. 2025년도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4년도말 조성액 ㉠	20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5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 감 ㉤=㉢-㉣		
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	382,876	52,690	60,000	△7,310	375,566	

○ 자금 운용 계획

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435,566	370,953	64,613
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	36,000	36,000	0
이자수입	16,090	7,000	9,690
예치금 회수	382,876	327,953	54,923

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435,566	370,953	64,613
사무관리비	60,000	17,000	43,000
예치금	375,566	353,953	21,613

6. 검토의견

○ 기금 개요

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선별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·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근거로 1995년 설치되었음.

○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은

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,600만원

예금이자수입 1,669만원

총 5,269만원이며,

지출내역은

재활용 수거운반비 400만원

전용마대 등 제작 5,000만원

홍보물제작 600만원

총 6,000만원입니다.

-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재활용 자원의 수거율 제고에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6.7.18>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관할지역 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<개정 2016.7.18, 2020.9.18>
2.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에 수입금 <개정 2016.7.18>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장비·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
 2.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(단,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범위 안에서만 지원) <개정 2020.9.18>
 3.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